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주식인도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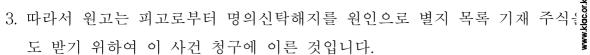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◈◈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금 ○○○ 원에 취득하면서 편의상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고,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
- 2. 원고는 20〇〇. 〇〇. 〇〇.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



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주식보관증

1. 갑 제2호증

통고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2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목 록



발행회사 : ○○주식회사

주식의 종류 : 기명식 보통주식

1주당 액면가액 : 10,000원

주식수 : 25,500주

주권번호: 000001 ~ 000051(오백주권 51장)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⊏☞소멸시효일람표 ^^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(다만,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함)(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2973 판결), 위 사안과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할 것임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조제1항, 제2항)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채권성립 당시 위 주식이 있었던 장소)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

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함께 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